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분야 건설위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49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11.
3. 회 부 일 : 2024.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9항 및 제30조의2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자가 되어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에게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 ⑧ (생략) <u><신설></u>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국가, 지방자치단체</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u>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u>⑤ 제3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⑤ ~ ⑦ (생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⑨ -----제8항까지의----- ----- ----- -----.

□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1)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업자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제조·용역업종을 포함한 57개의 표준하도급계약을 보급(2024년 12월 기준)하고 있음.

□ 개정안은 공공분야 건설위탁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에 관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첫째,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의 설정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²⁾
- 둘째, 공공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무 사용을 통해 민간 건설 계약으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보다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음.
- 셋째,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의 적용대상을 공공분야 건설위탁으로 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봄.

2)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공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특약 설정비율은 44.8%에 불과한 반면, 변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원사업자의 자체 계약을 사용할 경우 부당특약 설정비율이 73.6%에 달함(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입법 개선방안. 서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의 실익 측면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종에서 원사업자의 96.9%, 수급사업자의 98.7%가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미 건설 분야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³⁾
- 다음으로 개별 공사의 특수성, 계약 당사자의 자율성 및 업종 간 형평성 측면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을 통하여 획일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계약 자유의 원칙 훼손, 건설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의 어려움 등 우려를 제기함. 또한, 대한건설협회도 개별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건설 위탁만을 한정하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우려 등으로 그동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3) 다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2년 조사에서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공공공사 77.7%, 민간공사 4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높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반박하였음(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한 입법 개선방안. 서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사 법안 발의 현황(제19대 국회~제21대 국회)>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제21대 국회
• 노웅래·노회찬 의원안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서형수 의원안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김주영 의원안 -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한편, 개정안은 문언상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례⁵⁾ 등을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u>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 (단서 생략) 1. ~ 3. (생략)	⑨ ----- ----- ----- --제1항에 따른 <u>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u> ----- (단서 생략) 1. ~ 3. (생략)

4)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의 처
02)6788-5109